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9. . . (제 회)	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개호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9. . .

법제처 심사전

## 1. 의결주문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자연휴양림에서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, 그 금지행위를 확대하고,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점검방법을 규정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확대(안 제21조의6 및 제38조)

-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·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고,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.

나.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·관리 주체 명확화 및 점검 근거 마련(안 제30조)

-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·관리 주체를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은 산림청장이,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, 공유림 및 사유림은 시·도지사로 명확히 규정하고,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.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6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그 밖에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·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  
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제30조제1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
따른 소관 산림에 위치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 
신설한다.

1. 산림청 소관 국유림: 산림청장
2. 제1호외의 국유림·공유림 및 사유림: 시·도지사

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 
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8조제1항제3호 중 “제21조의6제2호”를 “제21조의6제2호·제3호”로,  
“오물·쓰레기를 버린”을 “금지된 행위를 한”으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의6(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) 누구든지 자연휴양림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1조의6(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·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</u></p>
<p>제30조(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) ① <u>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</u>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·관리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보호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0조(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) ① ----- <u>시·도지사</u>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<u>소관 산림에 위치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산림청 소관 국유림: 산림청장</u></p> <p>2. <u>제1호외의 국유림·공유림 및 사유림: 시·도지사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</p>

<p>제3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삭 제</li> <li>2. (생 략)</li> <li>3. <u>제21조의6제2호</u> 및 제23조의 3제3호를 위반하여 <u>오물·쓰레기를 버린 자</u></li> <li>4. 5. (생 략)</li> <li>②·③ (생 략)</li> </ol>	<p><u>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38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<u>제21조의6제2호·제3호</u> --- ----- <u>금지된 행위를 한</u> ----</li> <li>4. 5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211